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

-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분리 추가(별표1 제7호 다목)

-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5 제2호 라목 6))

-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 338 - 4712

○ 팩스 : 061) 338 - 4719

○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 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항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에서부터 별표 3”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기기부호 및”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기기부호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2와 별표 3의 대상기자재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을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라목 단서사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바목 단서사항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 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라목”을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0호 다목, 라목, 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다.(단, 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비치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기부호 및”을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을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0호 자목 35)]”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을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0호 자목 35)]”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2항 관련) 및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을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선박국용	○	○				○			SA	
	2) 해안국용	○	○				○			SB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 MF전용수신기	○	○				○			MR	
	2) MF·HF전용수신기	○	○				○			HR	
	3) VHF전용수신기	○	○				○			VR	
다. 협대역직접인쇄 전신장치의 기기	○	○					○			SN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MF·HF송수신장치	○	○				○			SH	
	2) VHF송수신장치	○	○				○			SV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 장치의 기기	1)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	○				○			SRRT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SRAIS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NR	
사.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	○				○			SE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VA1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VA2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VA3	
카.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	
타. 경보자동전화장치	○	○					○			T	
파.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C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하.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 직경 32cm이상	○	○				○			RAL	
		나) 표시면의 유효 직경 25cm이상 32cm 미만	○	○				○			RAM	
		다) 표시면의 유효 직경 18cm이상 25cm 미만	○	○				○			RAS	
	2) 국내 항해용	○	○				○			RC		
	3) 국내 소형선박용	○	○				○			RD		
거.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 비치 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	
		나) 중단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	
		다)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	
	2) 임의 비치 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A	
		나) 중단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B	
		다)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A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				○			B	
더. 자동 식별장치 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 식별장치	○	○					○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 장치	○	○					○			AIS2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나.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기기			○	○				○			SSS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SRA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RLS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1	
라.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S	
마.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P1	
	2) 라디오로보트 기기		○				○			P2	
바. 무선표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1	
사.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1	
	2) 해상용	○	○		○		○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	○				○			CCCA	
아.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PMSE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2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3	
카.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장치	○	○				○			IPN4	
	4) 기 타	○	○				○			IPN9	
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MOB	
파.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ITS1	
	2)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TS2	10mW/MHz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소출력 무선 기기에 해당
<p>※ 비 고</p> <p>○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p>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A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5) 기타	○	○				○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CS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5) 기타	○	○				○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M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5) 기타	○	○				○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TE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5) 기타	○	○				○			LTE9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O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5) 기타	○	○				○			IOT9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1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12	
	3) 기 타	○	○				○			FVG13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2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22	
	3) 기 타	○	○				○			FVG23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A2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GMPCS	
카.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DATA	
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3	
	2) 해상용	○	○		○		○			C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CA5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WIBRO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GHz 주파수대역	○	○				○			WLL1	
	2) 26GHz 주파수대역	○	○				○			WLL2	
<p>※ 비 고</p> <p>○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p>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5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	○					○		ITS3	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MHz 주파수 대역	○	○		○					RFID1	
	2) 433MHz 주파수 대역	○	○					○		RFID2	
	3) 13.56MHz 주파수 대역	○	○					○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MHz ~ 923.5MHz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MHz ~ 946.3MHz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GHz 주파수 대역	○	○					○		USN3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GHz 주파수 대역	○	○	○	○					DCP17	
	2) 2.4GHz 주파수 대역	○	○	○	○					DCP24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MHz ~ 264MHz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GHz ~ 23.6GHz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GHz ~ 66GHz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2GHz ~ 123GHz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GHz ~ 246GHz 주파수 대역	○	○					○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MICS4		
카.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 5.8GHz 주파수 대역	○	○					○		SRD5	
	2) 10GHz 주파수 대역	○	○					○		SRD10	
	3) 24GHz 주파수 대역	○	○					○		SRD24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TVWS1	
	2) 이동형 기기	○	○					○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TLPR	
	2) 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	○					○		LPR	

※ 비 고

1.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3.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H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	○				○			HAM1	
	2) VHF/UHF대 기기 등	○	○				○			HAM2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시스템류	1) 전화교환기 (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		○			○			B11	
	2) 데이터교환기	○		○			○			B12	
	3)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ISDN교환기 포함)	○		○				○		B13	
	4) 구내교환기(PBX)	○		○				○		B14	
	5) ATM교환기	○		○				○		B15	
	6) 키폰시스템	○		○				○		B21	
	7)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		○				○		B31	
	8) 자동음성처리 시스템 (카드식 포함)	○		○				○		B41	
	9) 전자사서함시스템 (카드식 포함)	○		○				○		B42	
	10)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11)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				○		B51	
	12)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				○		B5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13) 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	가)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		○					○	LOW21		
	나) 시스템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	LOW22		
	14)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나. 회선중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		○				○		C12		
	3)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				○		C13		
	4)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				○		C14		
	5) 광통신용 회선중단장치	○		○				○		C21		
	6)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				○		C31		
	7) PCM단국장치	○		○				○		C41		
	8)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중단장치류	○		○				○		C99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		A11		
	5)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 기능과 관계 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		A12		
	6)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		A13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7)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 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8) 영상전화기	○		○				○		A16	
9)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 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		A17	
10)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11)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카드식 포함)	○		○				○		A21	
12)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카드식 포함)	○		○				○		A22	
13) 팩시밀리 모뎀 (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		A23	
14)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5)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6)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7)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8)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				○		A35	
19) 코텍	○		○				○		A36	
20) 다기능보조기기 (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 방식 기기)	○		○				○		A41	
21)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22) 원격제어기기	○		○				○		A45	
23)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A51	
24)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25)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	○		○				○		A81	
26)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 전화기, 라우터 등)	○		○				○		A8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27)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		○					○		A86	
28) 공중전화기	○		○						○	A18	
29) ISDN 망중단기기(NTE)	○		○						○	A61	
30)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31)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32) 접속 커넥터			○						○	LOW11	
33)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					○		A90	
34)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D11	
	2) 주파수변조기	○		○					○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A85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			A83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증폭기	○		○				○		D21	
나. 레벨조정기	○		○				○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D33	
라. 광 증폭기	○		○				○		D34	
마. 신호처리기	○		○				○		D32	
바. 분기기			○					○	LOW12	
사. 분배기			○					○	LOW13	
아. 동축케이블			○					○	LOW14	
자. 보호기			○					○	LOW15	
차. 가입자보호기(CATV)			○					○	LOW16	
카. 광분배기			○					○	LOW17	
타. 광케이블			○					○	LOW18	
파. 직렬단자			○					○	LOW1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D99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산업·과학·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 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 응용설비는 제외)	1)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11	
	2)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21	
	3)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31	
	4)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41	
	5) 전기용접기류 (충형아크접착기 포함)	○						○	IMV11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						○	MOB11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전장품)	○						○	MOB31	
	3) 전자식 운행기록계	○						○	LIM11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 뜯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 마사지기, 전기 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 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 청소기)	○						○	CLN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전기다리미 및 전기 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팀 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	IRN11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	DSM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콘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 프라이팬, 전기고기 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				○		○	MWO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WSM11	세탁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과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 머리인두, 모발말개)	○							○	HDR11		
7) 전기보온기 및 전기 온장고, 전기주온기	○							○	WRM11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 드믹서, 전기녹즙기, 크 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 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방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유절기, 전기폴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	KTC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9)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 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찌뽕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전기액체 가열기기)	○					○		○	CUK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요 포함)	○					○		○	MAT11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 제품은 제외	
11) 전기찜질기	○							○	STW11		
12) 발 보온기 및 전기 손난로	○							○	WRM21		
13)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및 전기순간온수기	○							○	POT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14) 전기냉장·냉동 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포함)	○							○	COL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15)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RAM11		
16) 가정용 전동채봉기	○							○	SEM11		
17) 전기충전기	○							○	CHG11	출력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18)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포함)	○							○	HRY11		
19)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							○	STV11		
20) 전기맛사지기	○							○	MSG11		
21)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에 한함)	○							○	SCD11		
22)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포함) ※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PUM11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kW 이하' 이외의 기기는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3) 전기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및 사우나용 전열기 포함)	○							○	SUN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24) 전기욕조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 포함)	○							○		BTH11	
25) 공기청정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AIR11	정격 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26) 자동판매기	○							○		MHN11	
27)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FAN11	정격 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TH21	
29) 가습기	○							○		MST11	
30)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		DIS11	
31) 전기용해기 (왁스용해기, 초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		MHN21	
32) 이미용기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							○		PET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33)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						○	SKT11		
	3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CHR11		
	35) 전기온수매트 (전기보일러, 전기 온수침대 포함)	○						○	BOL11		
	36)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	BRH11		
	37) 해충퇴치기 및 전기포충기	○						○	VRM11		
	38) 전기집진기	○						○	DUS11		
	39) 착유기	○						○	MIL11		
	40)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 보관기, 지폐·동전 교환기)	○						○	SEV11		
	41) 전기에어커튼	○						○	CTN11		
	42) 팬코일 유닛 (Fan coil unit)	○						○	FAN21		
	4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44)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및 기타 게임기기)	○						○	GAM11		
	45) 전동형 롤스크린	○						○	CTN21		
	46)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	VRM21		
	47) 보플제거기	○						○	CLE11		
	48) 산소이온발생기	○						○			
	49)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포함)	○						○	COW11		
	50)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포함)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51)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햄머, 전기급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잔디깎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정격 입력이 1.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1	
53) 전기가열기기 (납땀인두, 납땀제거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								○	WDM11	
54)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								○	AQU11	
55) 기포발생기기	○								○	BBL11	
56)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BLD11	
57) 전기분무기	○								○	MST11	
58) 전기소독기	○								○		
59)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ROL11	
60) 과일껍질깎기	○								○		
61) 감자탈피기	○								○		
62) 전기정미기	○								○	KCN11	
63) 전기빵자르개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64) 애완동물 목욕기	○						○	POL11	
	65) 전기주류숙성기	○						○	ELD11	
	66) 전기시계	○						○	WAT21	
	67) 컴프레서	○						○	COM11	
	68) 전기분수기	○						○	WTP11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70) 수도동결방지	○						○	WTR11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BIN11	
	72) 전기작동 도어록	○						○	DOR11	
	73) 기타 1)부터 50)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	○						○	HOU98	
	74) 기타 53)부터 72)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	○						○	HOU99	
라.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기 또는 장치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대상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 (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 변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						○	IVT11	안정기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대상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LIG11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	LIT21	
마.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 전원시설)	○							○	TRA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바. 전력선통신기기류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 응용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						○		LIN	
사. 무정전 전원장치	○						○		IMO11	정격용량이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대상
아.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타이머·타이머스위치 포함)	○						○	SWT11	
	2) 전자개폐기									
	3) 전자식 온도조절기									
	4) 기타 이와 유사한 스위치 및 개폐기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 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1) 텔레비전수상기	○					○		VDO11	
	2) 영상모니터	○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4) 비디오카메라	○					○			
	5) 튜너	○					○			
	6) 편집기	○					○			
	7) 디스크플레이어	○					○			
	8) 라디오수신기	○					○		RAD11	
	9) 앰프(앰프내장형 스피커 포함)	○					○		AMP11	
	10) 리시버	○					○		AUD11	
	11) 음성기록계	○					○		AUD11	
	12) 음성플레이어	○					○		AUD11	
	13) 오디오시스템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14) 전자악기	○						○			
	15) 위성방송수신기	○						○		STB11	
	16) 비디오게임기구	○						○			
	17) 비디오폰	○						○		VDO21	
	18) TV영상프로젝터	○						○			
	19) 음질조절기 (이퀄라이저 포함)	○						○			
	20) 오디오프로세서	○						○			
	21) 신호변환장치(AD/DA)	○						○		AUD21	
	22)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23) 컴프레서 게이트	○						○			
	24) 전자시계	○						○		WAT11	
	25) CCTV 카메라	○						○			
	26) 영상전송기	○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28) 영상기록계	○						○			
	29) A/V 신호수신기	○						○		VDO31	
	30) 영상프로세서	○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32) 턴테이블	○						○			
	33) 컴퓨터류	○						○		IMC11	
	34) 컴퓨터 주변기기	○						○		IMA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IMI	
	36) 기타 정보기기류	○						○		IMI61	
	37) 사무기기류 (코팅기,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여학실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채단기, 제본기, 전자칠판,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충전기, 번호표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						○		IMO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22	
	39)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11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		IMDD	
	41) 기타 이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기기류	○						○		AVE99	
차.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11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2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기기에 한함)	3) 에스컬레이터·무빙 워크 및 구성품류	○						○		ELV31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		ELV41	
카.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에 한함)	1) 누전경보기(수신부)	○						○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						○		FIR2	
	3) 수신기	○						○		FIR3	
	4) 중계기	○						○		FIR4	
	5) 감지기	○						○		FIR5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 소화장치	○						○		FIR8	
	9) 고체에어로졸식자동 소화장치	○						○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 소화장치	○						○		FIR11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						○		FIR12	
	13) 자동폐쇄장치	○						○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 쿨러설비	○						○		FIR14	
	15) 플랩댐퍼	○						○		FIR15	
	16) 유도등	○						○		FIR16	
	17) 비상조명등	○						○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						○		FIR18	
타.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 로 분류)		○						○		BIC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p>파.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p>	○						○		PWR11		
<p>하. 기타 기기류</p>	<p>1) 가목, 다목, 라목, 사목, 이목, 자목, 파목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류</p>	○						○		IND	
	<p>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 장치)</p>	○						○		LIM21	
	<p>3) 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p>	○							○	AVR11	
	<p>4)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p>	○							○	HVT11	
	<p>5) 전기용품 보호용 부속기기(케이블릴, 누전차단기)</p>	○							○	CBL11	
<p>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에 준하는 기기로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p>	○							○		EXP11	
<p>너.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p>	○							○		REC	
<p>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p>	○							○		UBD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p>※ 비 고</p> <p>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자기시험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p> <p>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 카메라 렌즈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마.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p> <p>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p> <p>5.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p> <p>6.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모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p>										

[별표 2]와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6) 중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를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에 통합하고 삭제한다.

[별표 7] 제3호가목을 제1호로, 제3호나목을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식에 관한 기호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2. 용도	가. 육상건조물 안에서 사용하는 것		I	
	나. 육상건조물 밖에서 사용하는 것		O	
	다. 상기 외의 특수한 조건하에 사용하는 것		S	
3. 사용환경	가. 0℃ 내지 (+)4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1	
	나. (-)10℃ 내지 (+)5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2	
	다. (-)20℃ 내지 (+)5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3	
	라. (-)15℃ 내지 (+)50℃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4	
4. 합격자	신청인의 성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영문자1자			
5. 방식	가.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		무선전신경보 신호로서 동작하는 것	1
	나. 무선전화 경보 자동 수신기	1) 부가확성기 또는 부가가청 경보기를 갖는 것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	2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	3
		2) 부가확성기 또는 부가가청 경보기를 갖지 않는 것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	4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	5
			다. 무선방위측정기	
			2) 브라운관식	DB
			3) 지시계식	DM
			4) 자동방위측정기	DA
			5) 기타	DX
	라.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송신 및 수신설비의 기기		1) 고도 9,000m이상에서 사용하는 것	AA
			2) 고도 6,000m이상 9,000m 미만에서 사용하는 것	AB
			3) 고도 6,000m미만에서 사용하는 것	AC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마. 경보자동전화장치	1) 해변에서 사용하는 것	IB	
	2) 구명정·단정 또는 구명벌에서 사용하는 것	IL	
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1) 1,605.5 kHz이상 26,175 kHz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것	1	
	2) 전기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기재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것	2	
	3) 기타	3	
사.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 이탈장치에 장치하는 것	1	
	2) 기타	2	
아.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1) 물에서 사용하는 것	1	
	2) 기타	2	
자. 기상원조국용 송신설비의기기	1) 라디오존데	PS	
	2) 기상용 라디오로보트	PR	
차. 라디오부이의 기기	1) 선택호출장치가 있는 것	1	
	2) 기타	2	
카. 무선헤출국용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1) 자가통신용	PA	
	2) 공중통신용	PB	
타. 이동가입 무선전화통신을 하는 육상이동업무용의 송수신장치	디지털방식	D	
파.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아날로그 방식	A	
	2) 디지털방식	D	
하.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S	
	2) 비동기식	AS	
거.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아날로그 방식	A	
	2) 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D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 /"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 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송신 및 수신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R"로 표시한다.	
		2)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 한다.	
7. 송신·수신의 구별	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8. 전력	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 ", " 로,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최소전력/최대전력" 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9. 전파형식	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10. 채널	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을 삽입한다.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호를 모두 표시한다.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를 삽입하고,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 항목을 기재한다. 4. 방식이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하여 모든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방식부터는 "+"를 삽입하고 기종, 용도,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항목을 차례로 기재한다.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구 분 \ 항 목	기 자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방 식	주 파 수	송·수신의구별	전 력	전 파 형 식	채 널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	○	○					
2.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	○	○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						
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5.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	○	○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8. 네비텍스수신기	○	○	○	○						
9.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	○	○		○		
10.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	○	○
1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		○	○	○	○	○
1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	○	○
13.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	○	○
14. 경보자동전화장치	○	○	○	○	○					
15.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	○	○	○					
16.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	○	○	○		○		○	○	
17. 무선방위 측정기	○	○	○	○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0.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21.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 링크 장치의 기기	○	○	○	○		○	○	○	○	○

구 분 \ 항 목	기 자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방 식	주 파 수	송·수신의구별	전 력	전 파 형 식	채 널
2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23.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25.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	○	○
26.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	○	○	○	○	○		○	○	
27.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	○	○	○
28.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	○	○	
29.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1.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	○		○	○	○	○	
33.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		○	○	○	○	
34.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	○		○	○	○	○	○
35.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36.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38.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9.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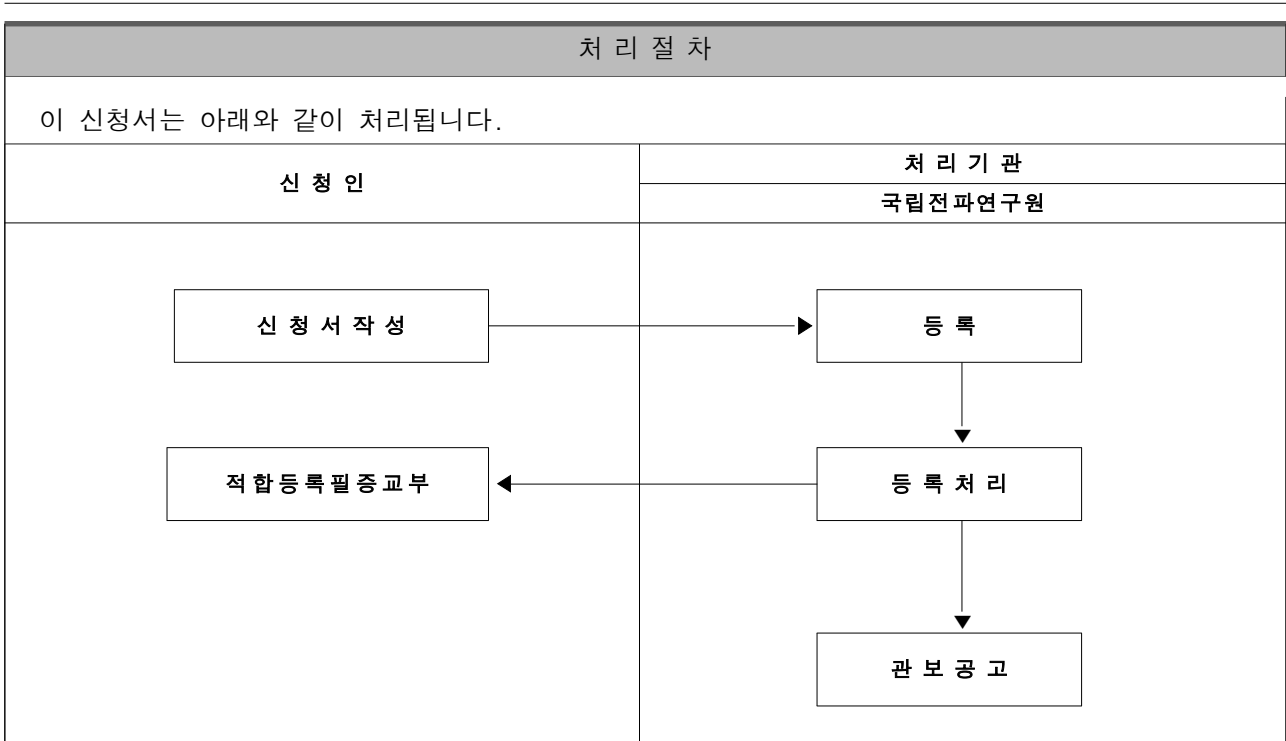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 자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방 식	주 파 수	송·수신의구별	전 력	전 파 형 식	채 널
	4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42.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3.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44.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46.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7.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8.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9.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5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		○	○		○	
	51. 차계유도식 무선기기	○	○	○	○		○	○		○	
	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	○	○		○	○	○	○	○
	53. RFID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	○	○		○	○	○	○	○
	54. USN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	○	○		○	○	○	○	○
	55. 코드없는 전화기	○	○	○	○		○	○	○	○	○
	56.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		○	○	○		
	57.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	○	○		○	○	○		
	58.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		○	○			
	59.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	○	○		○	○	○		
	6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6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	○		○	○	○		
	6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		○		
	63.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뒷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별지 제6호 서식] 뒷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7. 기기부호(형식기호)

-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및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을 참고합니다.](#)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